
초경량비행장치 업무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모음

2021. 2. 22.

T S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관리 처

목 차

<input type="checkbox"/>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1
<input type="checkbox"/>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자격)	6
<input type="checkbox"/>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10

□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 (질문 1) 비행장치 신고 이후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법정 처리기간은 7일로, 신고신청 업무량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서류보완요구 시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재통지합니다.

○ (질문 2) 법인 소유의 기체 신고시, 신고서 내의 생년월일에 어떤 내용을 기재하나요?

☞ (답변) 해당 법인의 설립일을 기재합니다.

○ (질문 3) 영리, 비영리 기체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항공기 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 될 초경량비행 장치의 경우 영리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치의 경우 비영리로 신고합니다.

☞ (답변) 비영리로 신고한 후 해당 비행장치를 사업용으로 쓸 경우 영리로 변경·이전 신고 필요합니다.

※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이란?

1. **항공기대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대여하는 사업(항공레저스포츠용 대여는 제외)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다음의 업무를 하는 사업
 -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 2) 사진촬영, 육상·해상 측량 또는 탐사
 -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 4) 조종교육
 - 5) 그 밖의 업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
 -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 나. 국방·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1) 항공기(비행선과 활공기에 한정한다), 경량항공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
 -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
 - 가. 활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 나. 경량항공기
 - 다. 초경량비행장치
 - 3)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서비스

○ (질문 4) 신규신고 시 제출서류 중,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당 서류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세부내역이 없는 경우, 내역이 포함된 견적서 등 포함), 거래명세서(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계산서), 매매계약서, 제작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 (답변) 해당증빙이 없을 경우에는 소유자정보, 구입경로, 구입일자, 제품번호 등을 기재하고, 해당기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에 자필서명이 들어간 소유확인서 제출합니다.

○ (질문 5) 초경량비행장치 신청서 내용 중 제작번호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제작사에서 제작번호를 발급하는 기체의 경우 제작사에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 (답변) 자체제작일 경우, 제작사(개인)가 직접 모델명과 제작번호를 중복되지 않게 부여하여 자체 관리하시면 됩니다.

○ (질문 6)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이 무엇인가요?

☞ (답변) 자체중량은 연료, 장비*, 화물, 승객 등을 포함하지 않은 항공기의 중량(무인 동력비행장치는 배터리 무게를 포함)입니다.

* 장비는 비행과 관련없고 탈부착 및 적재 가능한 것: 탈착되는 짐벌 및 카메라, 약제, 낙하산, 에어백, 구명환 등

☞ (답변) 최대이륙중량은 항공기가 이륙함에 있어서 설계상 또는 운영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 적재 가능한 중량입니다.

○ (질문 7)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이 동일한 기체는 무엇인가요?

☞ (답변) 제작사의 기준에 따라서, 설계상 추가 부속품을 장착할 수 없거나 또는 추가 적재를 권장하지 않는 운영상의 한계 때문에 이러한 기체들은 자체중량과 최대 이륙중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질문 8) 초경량비행장치 사진은 어떤 사진을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측면사진을 촬영(가로 15cm, 세로 10cm)의 하여 제출하되, 인터넷에 있는 동일기체 사진이 아닌, 소유한 기체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제출합니다.

○ (질문 9) 초경량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 하나요?

☞ (답변)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제원 및 성능표를 참고하여 작성,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제원 및 성능표 사진첨부 가능

<제원 및 성능표 예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118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 서식>

주 요 제 원	최고속도		엔진형식	
	순항속도		자체중량	
	실속속도		최대이륙중량	
	길이×폭×높이		연료중량	
	탑승인원		카메라 등 탑재여부	

*최고속도 : 해당장치의 최고 속도를 기재

*순항속도 : 연속적인 정상비행을 계속할 때 사용되는 속도

*실속속도 : 실속(급격히 양력을 상실하여 비행을 유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속도

*탑승인원 : 해당장치의 탑승인원을 기재

*엔진형식 : 해당기체에 사용된 엔진형식 기재

*자체중량, 최대이륙중량 : 해당 기체의 자체중량 및 최대이륙중량을 기재

*연료중량 : 해당제원이 있는 경우 기재

*카메라 등 탑재여부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제원표에 해당 제원이 없는 경우, 해당내용 미기재

○ (질문 10) 보관처가 무엇인가요?

☞ (답변) “보관처”란 기체를 비행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 기체를 보관하는 지상의 주된 장소를 말합니다.

○ (질문 11) 변경·이전 사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변경사유”란 용도, 소유자등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주소, 보관 장소의 변경을 의미하며, “이전사유”란 비행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12) 말소사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말소사유”란 다음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 1.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 된 경우
- 2.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 3.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등
- 4.신고대상 기체가 소유자 변경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대상이 된 경우

○ (질문 13) 변경 및 이전신고 시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변경 및 이전신고 시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드론원스탑 시스템에서 변경·이전 신청

▶ 변경신고 증빙서류 예시(아래 예시된 서류 중 해당내용 증명되는 서류 첨부)

* 해당되는 서류가 없는 경우, 기타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사유	증빙서류 예시	발급방법
비행장치의 용도변경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텍스, 관할세무서
소유자성명 변경(개명)	-기본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동/시/구/읍/면
	-주민등록초본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역 포함)	-정부24, 동/시/구/읍/면
주소변경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경사항 포함) -부동산 계약서	-정부24, 동/시/구/읍/면 -
사업자 명칭 또는 주소변경	-법인등기부등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법원 등기소
	-사업자등록증 (교부사유에 해당내역 명시)	-국세청 홈텍스, 관할세무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사실증명(대표자등록내역)	-국세청 홈텍스, 관할세무서
보관처 변경	-보관처 변경 전 주소, 사진과 보관처 변경 후 주소, 사진	-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서 -소유증빙확인서(별첨2) 등	-

○ (질문 14) 신고증명서를 분실하였는데,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드론원스탑시스템(무인비행장치)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직접 다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 <https://drone.onestop.go.kr>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현황 → 처리완료된 신청번호 클릭 후 첨부파일 다운

☞ (답변) 예전 지방항공청을 통해 신청하였거나, 방문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별도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신청(e-mail 또는 Fax) 합니다.

○ (질문 15)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대상이 2021.1.1.부터 비영리인 경우,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로 변경되었는데, 이전에 갖고 있는 미신고대상 기체도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개정법령에 따라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1년 6월 30일 까지 신고 필요하며, 이전에 지방항공청에 신고 완료하여 신고번호를 발급 받은 기체는 다시 신규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 (질문 16)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변경·이전, 말소 포함)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답변)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질문 17) 신고증명서는 항상 소지하여야 하나요?

☞ (답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은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 (질문 18) 신고번호는 왜 기체에 표시해야 하나요?

☞ (답변) 항공안전법 제122조제5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토록 의무화하여, 사고 등 발생 시 해당 소유자 정보를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 (질문 19) 신고번호는 어느 곳에 표시해야 하나요?

☞ (답변) 신고번호 표시는 공단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및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20)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전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시 보험가입서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험가입 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사업법 제70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항공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자격)

○ (질문 1) 학과시험은 어디에서 치르게 되나요?

☞ (답변) 학과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CBT시험장 확장 구축이 완료('21년 하반기 예정) 되는대로 기존 4개소(서울, 대전, 부산, 광주)에서 9개소(서울, 광주, 대전, 부산, 화성, 춘천, 전주, 대구, 제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질문 2) 다른 종의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과시험을 따로 봐야 하나요?

☞ (답변) 아닙니다. 학과시험은 같은 종류의 자격(예:무인멀티콥터) 1종부터 3종까지 통합으로 시행되며 학과시험에 합격한 경우, 유효기간 (2년) 이내라면 1종부터 3종까지 모든 자격증명에 적용됩니다.

○ (질문 3) 1종을 따면 2종이나 3종 자격증명을 별도로 취득하여 하나요?

☞ (답변) 아닙니다. 1종을 취득하면 2종, 3종 및 4종 기체에 대한 운영이 가능하므로 1종만 취득하여도 됩니다. 즉, 상위 자격증명을 취득하면 하위 자격증명이 필요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 (질문 4) 학과시험을 '21년 3월 1일 이전에 봐서 합격을 했는데 다시 봐야 하나요?

☞ (답변) 아닙니다. 학과시험 유효기간(2년)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자격취득을 원하는 기체 종류에 따라 학과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 (질문 5) 4종 자격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 (답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4종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교육훈련포털(<https://www.kaa.atims.kr>)을 통해 '21.2.25(목) 13:00부터 수강 가능 하며 24시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 (질문 6) 4종 자격 취득을 위한 온라인 교육은 총 몇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답변) 온라인교육은 항공법규(3시간), 비행이론 및 운용(2시간), 항공기상(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시간 과정입니다.

○ (질문 7) 실기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선 어떤 기체를 준비하여야 하나요?

☞ (답변) 응시하는 종별 무게기준에 해당하는 기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분	무게기준	영리	비영리
1종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이하	보험가입 증서 필요	서약서 징구
2종	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3종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최대이륙중량 7kg 이하		
4종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		

○ (질문 8) 실기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기체의 종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답변) 제원표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실기시험 응시 필요서류인 기체신고증명서를 통해 종별을 확인 할 예정입니다.

○ (질문 9) 2종 실기시험은 약식이라고 하는데 약식 실기시험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약식 실기시험은 2종 실기시험으로써 1종 실기시험 평가항목을 2종에 맞게 축소·보완(약식)하여 평가가 진행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질문 10) 개인이 보유하던 기체로도 시험이 가능한가요?

☞ (답변) 네. 신고된 기체라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영리/비영리 관계없음)

○ (질문 11) 실기시험은 어디서 치르게 되나요?

☞ (답변) 무인멀티콥터 및 무인헬리콥터의 경우 공단 화성자격센터, 상설실기시험장 및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무인비행기의 경우 응시자가 요청한 일부 장소에서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질문 12)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 운영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답변) '21년에 시행되는 실기시험은 교육을 이수한 교육기관(전문교육기관 또는 사설교육기관)에 상관없이 사전에 응시자가 협의한 전문교육기관 또는 공단에서 제공한 상설실기시험장에서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단, 실기시험 응시에 필요한 서류(비행경력증명서, 제원표, 신고증명서, 신체검사증명서, 보험 관련서류 등) 및 기체는 응시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 (질문 13) 코로나로 인해 자격시험 응시인원이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소 방안이 있나요?

☞ (답변) 학과시험 응시인원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PBT, CBT를 한시적으로 병행운영 예정입니다. 또한 실기시험은 상설실기시험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질문 14) 조종자격 취득 가능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1~3종 취득가능 나이는 만 14세이상이며, 4종 취득가능 나이는 만 10세이상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및 실기평가교관 취득가능 나이는 현재 만20세이며, 만18세이상으로 개정('21.3.1.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질문 15) 자격 차등화에 따른 비행기록의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비행경력 작성 및 비행경력증명서 발급은 비행당시 기체로 비행한 사실을 그대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비행경력의 인정은 '21.3.1.에 시행되는 세칙에 근거하여 상위자격에 해당하는 기체 경력은 하위자격의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질문 16) 지인 중 지도조종자가 있는 경우 1대1 교육으로 비행경력증명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 (답변) 아닙니다. 비행경력증명서는 전문교육기관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조종교육)으로 등록된 사용사업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질문 17) '21년 3월 1일 이전에 받은 실기교육은 인정 되나요?

☞ (답변) '21년 3월 1일 이전에 실기교육을 통해 자체중량 12kg초과 150kg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영리용)로 쌓은 비행시간은 1종 비행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질문 18)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 (답변) 교육비는 각 교육기관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질문 19) 기존 자격증을 발급받았는데, '21년 3월 1일 이후 자격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답변) 아닙니다. 기존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은 1종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새로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1년 3월 1일 이후 새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1종으로 표기되어 발급됩니다.

○ (질문 20)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를 사용할 경우, 교육할 때 마다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네. 항공안전법 제1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8조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하는 드론을 비행하기 전에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목적의 비행은 최대 6개월까지 비행승인이 가능합니다.

○ (질문 21) 교육기관 마다 순서, 구호 등 교육 방법이 상이한데 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시험 전 과정에 대한 영상을 공단에서 제작하여 올려주시면 안되나요?

☞ (답변) 관련 영상은 유튜브 채널 “TS 드론날자”를 통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채널 URL: <https://www.youtube.com/channel/UC46q7ckdrKxiSL5I7HOySTw>

○ (질문 22) 안전성 인증검사 신청이 집중되어 검사가 지연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나요?

☞ (답변) 안전성인증 업무 효율화를 통한 안전성인증 업무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자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와 업무개선 진행 중입니다.(무인비행장치 현장 점검항목 중 유사 점검항목 통합 및 기술 발전에 따른 비필수 점검항목의 축소 등)

○ (질문 23) 기체의 임의개조(중량 증가를 목적으로 기타 부품 부착 등)를 통해 최대이륙 중량 변경이 가능한가요?

☞ (답변) 최대이륙중량이란 비행장치의 구조안전성을 보장하는 설계 구조중량으로 외부 부착물의 장착 등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질문 24) 자체 제작 기체의 경우 최대이륙중량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설계자가 비행장치의 운용한계(자체중량, 유상하중, 연료탑재량, 하중배수 등)를 고려하여 이론적 해석 또는 시험을 통해 산정합니다.

○ (질문 25) 기존에 취미로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운영하던 사람들은 자격증명을 취득하여야 하나요?

☞ (답변) 네. `21.3.1 부터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에 따라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리뿐만 아니라 비영리 기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합니다.

○ (질문 26) `21.3.1 이후에 자격증명을 소지하지 않고 비행을 하게 되면 불법비행인가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 (답변) 네. 국토부, 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경과조치 대상자들이 경과조치 종료 전까지 사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연습비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입니다. 장소가 최종 확정되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자주하는 질문(Q&A)

○ (질문 1) '21.3월 자격개편에 따라 1종기체 교육을 위해 안전성 인증검사 신청을 항공안전기술원에 하였는데, 인증검사 전 교육시행이 가능한지?

☞ (답변) 1종 기체에 대한 안전성인증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1종 기체에 대한 비행(교육)은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21.3월부터 전문교육기관은 1종, 2종, 3종의 기체를 구비해야 하는 바, '21.3월 이전 1종 기체에 대한 안전성 인증검사를 신청한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은 충족('21.8월까지) 되어 2종, 3종에 대한 교육은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 2) 현재 전문교육기관에서 1종기체 구비를 위해 기체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제작사에서 항공안전기술원에 안전성 인증검사 신청을 하였는데,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 (답변) 전문교육기관에서 구매하려는 기체를 제작사에서 안전성 인증검사를 신청한 경우, 해당 전문교육기관과 제작사 간 계약서 등 증빙서류 확인 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21년 8월31일까지 완료)

○ (질문 3) '21.3월 자격개편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생 모집 시 차수별 교육과정은 1종, 2종, 3종을 구분하여 실시해야하는지?

☞ (답변) 개편되는 자격체계에 따라 1종, 2종, 3종의 비행경력시간이 각각 상이하나, 차수별 교육생 모집 시 1종, 2종, 3종 구분 없이 교육생의 교육시간이 15일(1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이 가능합니다.(종합안내서 6p 참고) 다만, 해당차수의 수료보고는 기종별 교육 종료일중 마지막 일자를 기준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4) '21.3월부터 1종, 2종, 3종을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훈련규정 변경이 필요한데, 공단에서 교육훈련규정을 승인하기 전까지 1종, 2종, 3종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인지?

☞ (답변) 교육훈련규정 개정 전 '21.3월1일부터 1종, 2종, 3종에 대한 교육생 모집과 교육운영이 가능하며, '21.3월말까지 기 인가된 교육훈련규정의 수정을 항공교육훈련 포털을 이용하여 공단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5) 현재 전문교육기관에서 자체중량 12kg을 초과하는 기체로 지도조종자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이 있으나, '21.2월까지 100시간의 비행경력을 채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 '21.3월 이후에도 기존의 기체로 지도조종자 교육을 할 수 있는지?

☞ (답변) '21.3월부터 지도조종자 및 실기평가조종자의 비행경력을 1종기체의 비행경력으로 한정함에 따라 해당 교육생의 부족한 비행경력은 1종기체(안전성 인증검사가 완료된 기체)로 비행을 실시해야 비행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 (질문 6)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신규 인가 신청 시 지도조종자와 실기평가조종자가 동일인이어도 전문교육기관 인가가 가능한지?

☞ (답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인가를 위해서는 지도조종자 1명, 실기평가조종자 1명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동일인인 경우 인가가 불가합니다.

○ (질문 7) 무인멀티콥터 전문교육기관 신규 인가 신청 시 실기교육장이 과수원이고, 비행금지구역 내에 있는데 이 경우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될 수 있는지?

☞ (답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농지 일시사용허가 또는 용도변경이 필요하며, 비행금지구역인 경우 지방항공청 등 공역관할 기관의 비행승인이 있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지정이 가능합니다.

○ (질문 8) 무인멀티콥터 전문교육기관 신규 인가 신청 시 실기교육장 규격의 길이가 100m, 폭이 85m인 경우 몇 개 라인 인가가 가능한지?

☞ (답변) 실기교육 1개 라인 기준 길이 80m, 폭 35m가 기준임에 따라 해당 실기교육장의 경우 2개 라인의 실기교육장 인가가 가능합니다.

○ (질문 9) 전문교육기관 지정 이후 교관, 기체, 실기교육장이 추가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변경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 (답변) 최초 전문교육기관 인가 이후 교관, 기체, 교육장 등의 변경 시 관련 공문을 공단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라며, 교관 및 기체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으로 변경승인이 가능하나, 실기교육장의 경우 추가 현장실사가 필요함에 따라 현장실사 결과 이후 교육운영이 가능합니다.

○ (질문 10)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신규지정 시 이론교육장과 실기교육장이 다소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는지?

☞ (답변)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이론교육장과, 실제 비행교육을 수행하는 실기교육장이 떨어져 있어도 전문교육기관 인가가 가능하나, 타 입법례에 따라 이론교육장과 실기교육장이 행정구역상 ‘도’ 경계를 벗어나 위치하는 경우(서울특별시-경기도는 동일 권역으로 인정)에는 인가가 불가합니다.